



#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350호 | 2017년 8월 10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내영 | www.nars.go.kr

##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 방향

원 종 현 \*

### 1. 들어가며

지난 2012년 3월15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를 통해 양국간의 통상관계는 더욱 긴밀해 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의 통상에서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원인을 한미 FTA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재협상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116.4억 달러에서 2016년 232.5억 달러로 5년간 116.1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역시 증가하면서 2011년 109.7억 달러에서 2015년 140.9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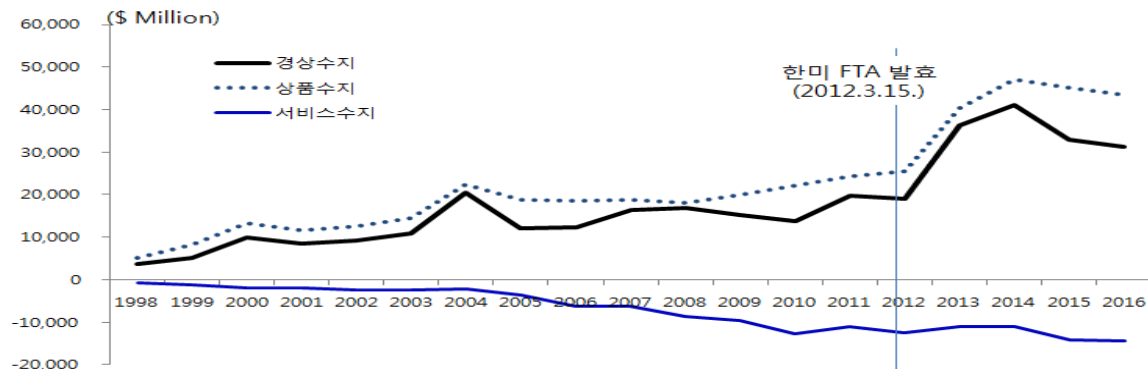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미 FTA가 여러 분야에서 양

국간의 무역 규모를 증대시키면서 국내 산업에 바람직한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실제 FTA 이후 무역수지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흑자가 증가한 모양을 보인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FTA를 통한 무역수지 상의 적자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FTA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통상에서 무역적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것을 반영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대미 교역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미 적자부문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미FTA에 있어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의 여지와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림 1> 한미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 한미 FTA 서비스 분야 주요 사항

### (1) 개요

한미 FTA 협정 제12장은 국경간 서비스 무역관련 조항으로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항공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분야는 제13장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상품 품목별 관세양허안의 합의가 상품분야 협정의 핵심이라 한다면, 서비스 분야의 협정은 개방범위와 관세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못지않게 서비스 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지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을 정하는 '제도 협정'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상품분야 협정과 차이가 있다.

한미 FTA에서도 서비스 분야는 상호 네가티브 방식<sup>1)</sup>을 견지하고, 최혜국 대우, 자유화 후퇴방지 매커니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비합치조치에 의거하여 유보안에 규정한 경우만 가능하다.

실제 한미 FTA 체결 당시,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우리는 총 91개의 유보안(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18개의 유보안(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였다. 이는 네가티브 유보방식에서 예외사항을 지정한 것으로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분야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 정부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향후 정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서비스 분야 등 총 44개 분야에 대해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미래유보 대상으로 선별하여 개방대상에서 제외한

1) 모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전제하고, 만약 국내적으로 판단하기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규제를 유보안에 기재하는 방식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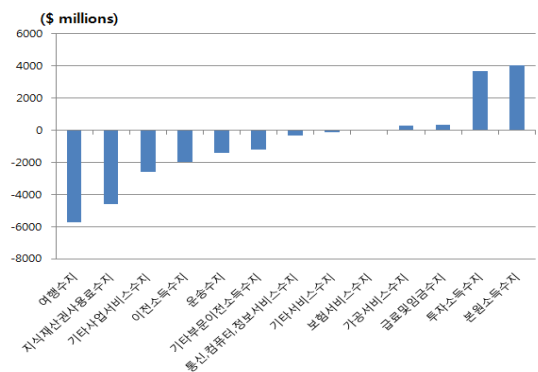
이를 위해 한미 FTA 제12장의 서비스무역협정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금지 및 현재 주재의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2) 현황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이 열악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유용한 점은 크게 떨어진다.

한미 FTA이후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가공서비스, 급료 및 임금분야 등 노동집약적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에 대해 약간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여행수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이 전소득, 운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 등 첨단분야에서 상당규모의 흑자를 나타낸다.

<그림 2>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산업 수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2>을 보면, 우리나라도 투자소득 수지나 본원소득 수지 부문에서 미국에 비해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기존 투자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소득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상대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미국 현지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해 적자를 나타낸다.

### 3. 한미 FTA 서비스 분야 전망

한미 FTA가 2012년 최종 합의되기까지 2007.6월 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진 후에도 2007년과 2011년의 추가 협상을 한바 있다<sup>2)</sup>. 모두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주로 미국의 신 통상정책을 반영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반영하면서 5년여의 추가적인 협상기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개정협상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과거와 같이 미국 주도의 의제가 설정되어 주로 철강 및 자동차 등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통상문제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서비스무역 부문에서 미국 다국적 기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통상 압력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이는 이미 한미 FTA 체결 당시에도 이 점이 적극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미래 우리나라의 핵심역량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산업인 소위 제4차 산업혁명 분야 대부분은 정보 및 지적재산과 연관되어 있어 한미간의 통상에 있어서 우리의 핵심역량이 발휘되기는 커녕, 대미 무역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실제 저작권을 한 예로 들면, 미국은 FTA 발효 전 30억 달러에서 2015년 59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이상의 흑자를 나타내면서, FTA로 우리나라에서의 미국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핵심역량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

우리나라의 주요 서비스 분야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요구가 제시된다면, 우리나라가 향후 주력으로 삼아야 하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상당기간 지체될 수도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 당시 나열될 수 없었던 신사업 분야, 핀테크나 첨단 서비스업 등은 현 체계에서 서비스 개방종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양허로 인하여 시장을 지키고 있는 분야와 달리 오히려 새롭게 지켜야 할 시장에서 미국의 서비스 기준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흡수될 우려도 높아졌다.

물론 FTA 체결 당시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만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체계에서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신금융상품이 해당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계금융기관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신 금융상품이 국내에 유입될 경로는 훨씬 넓어진 것이다.

국내 금융산업분야의 경우, 특허출원실적만 보아도 미국의 1/10 수준에 불과해 글로벌 IB가 국내 진출하면서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등 금융서비스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IT가 접목된 여러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러한 신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FTA체결과정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민정,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의 요청의 쟁점과 대응방안」, 『이슈와 논점』 제 133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7.20. 참조

#### 4. 대응방향

물론 국내 서비스산업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하여도, 이 모든 사항을 한미 FTA의 양허조항에 의존하여 보호할 수는 없다. 더구나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국내 서비스기업들은 고용이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나 취약한 경쟁력 등을 이유로 상당부분 보호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저하를 오히려 자초한 면이 있기도 하다.

특히 금융, 법률회계, 경영컨설팅,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업지원성 서비스 등이 미국에 비해 열위에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방과 경쟁을 통한 국내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신 서비스 산업 분야가 규제 없이 개방될 경우, 여전히 초기 단계에서 태동하는 국내 첨단 서비스 분야가 미국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존 제조업의 경우 국제분업을 통해 후발국이 시장 참여의 여지가 있는 것과는 달리, 첨단 서비스분야는 선점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미 FTA가 재논의 될 경우 이를 기회로 그동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 서비스산업 분야를 조속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유보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첨단 서비스 분야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확대하는 요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기존 여러 FTA에서 규정하지 못한 신 서비스 산업이 만들어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새로운 트

렌드를 선점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상태대로 개방을 지연시킨 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본질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5. 나가며

미국 무역대표부가 8월 중에 한미 FTA 개정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제 개정협의로 연결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개정협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분야의 무역적자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서비스분야 역시 의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에 비해 첨단 서비스 분야는 다소 열위에 있으며, 신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유보조항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서비스분야에 대한 무제한적 보호는 국내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지, 서비스산업을 미래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향후 완전 개방까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신서비스 분야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